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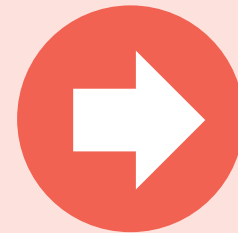
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

열세 번째, 다시 대한민국!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

개발제한구역(GB) 규제혁신

이전 정부

“수동적·경직적
제도운영으로
지역투자 유치 한계”



윤석열 정부

“① 지역, ② 환경, ③ 기업을
모두 고려하여
지역투자 **활성화** 지원”

정책방향

중앙정부 중심
획일적 규제

해제총량

엄격한 해제총량 적용으로
지역사업 추진 제한
→ 지역의 개발 가능
사업 제한

정책방향

지방 권한의 확대,
유연한 대응

해제총량

국가전략 +
지역전략사업 (비수도권)
해제총량 예외 인정
→ 지역의 개발 가능사업 확대

환경등급

환경 1~2등급지는
GB해제 불허
→ 개발가능지 확보 한계
및 부지정형화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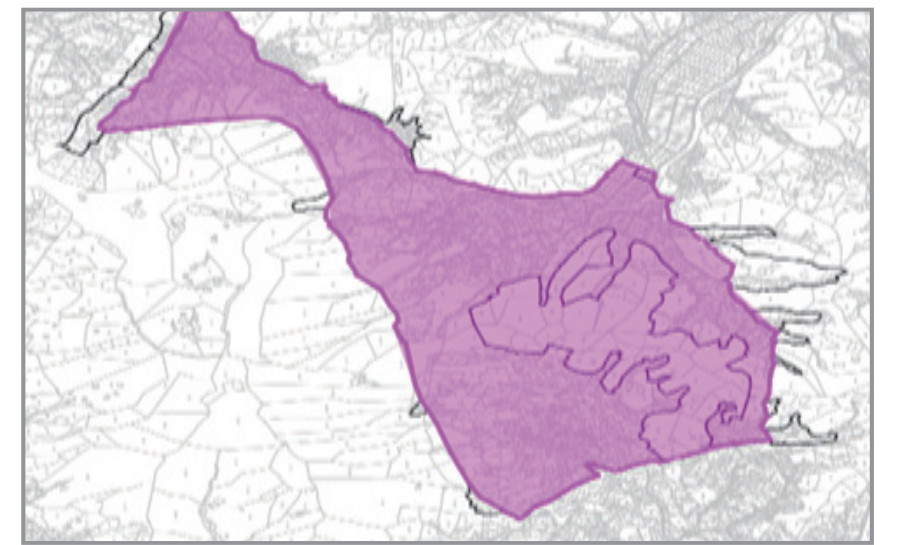
예시 : A산업단지 (이전)



환경등급

환경 1~2등급지해제 허용
(대체지 지정 조건)
→ 그간 개발이 불가능했던
구역도 개발 가능

예시 : A산업단지 (개선)



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

새로운 규제는 원칙적 금지

- 토지이용규제법에 등록해야
규제 신설 허용
-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 추가시
적정성 검토 의무화



기존의 낡은 규제는 철폐

- 현재의 336개 토지이용규제를
재검토하여 낡은 규제 혁파
- 중첩규제는 해제하기 쉽게
일괄심의 도입

